

속초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폐지 (안)

議案	73
番號	

提出年月日 : 1992. 3.

提出者 : 東草市長

☐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

- 소방법 개정으로 1992.1.1 부터 소방업무 수행책임이 국가에서 도지사로 전환되어 소방법 제 86조의 규정에 의하여 92.3.6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
- 현행 속초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속초시 조례 제 호

속초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폐지 (안)

속초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2년 3월 6일 부터 적용한다.

소 방 법 제 86 조 (의용소방대의 설치)

-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·직할시와 시·읍·면에 의용소방대를 둔다.
- ②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중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구성하되 그 설치·명칭·구역·조직·정원·임명·훈련·검열·복제 및 복무등에 관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한다.